

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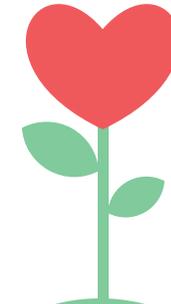
알기 쉽게 보는

정신건강의학과 입·퇴원제도





「정신건강의학과 입·퇴원제도」에 대하여 각각의 입원유형에 따른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.



Part. 01

권리고지

본인의 입원유형 및 그에 따른 퇴원방식
비자의적 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방법
비자의적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필요성 검토

Part. 02

자의입원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퇴원신청

Part. 03

동의입원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퇴원신청

Part. 04

보호입원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입원유지 및 입원연장
퇴원신청
보호입원 시 증빙서류
보호의무자 자격 및 결격사유

Part. 05

행정입원

진단 및 보호신청
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
행정입원 해제

Part. 06

응급입원

입원의뢰
전문의 진단 및 입원
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환

Part.

01 권리고지

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, 치료진으로부터 환자 자신의 권리에 대해 듣게 됩니다.

본인의 입원유형 및 그에 따른 퇴원방식

-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유형은 “자의입원”, “동의입원”, “보호입원” 및 “행정입원”이 있습니다.
- 자의적 입원은 “자의입원” 및 “동의입원”입니다. 이 경우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바로 퇴원하게 됩니다. 다만, “동의입원”의 경우에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원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.
- 비자의적 입원은 “보호입원” 및 “행정입원”으로 환자의 입원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 필요성에 따라 입원된 경우입니다. 비자의적으로 입원한 환자도 다양한 방법으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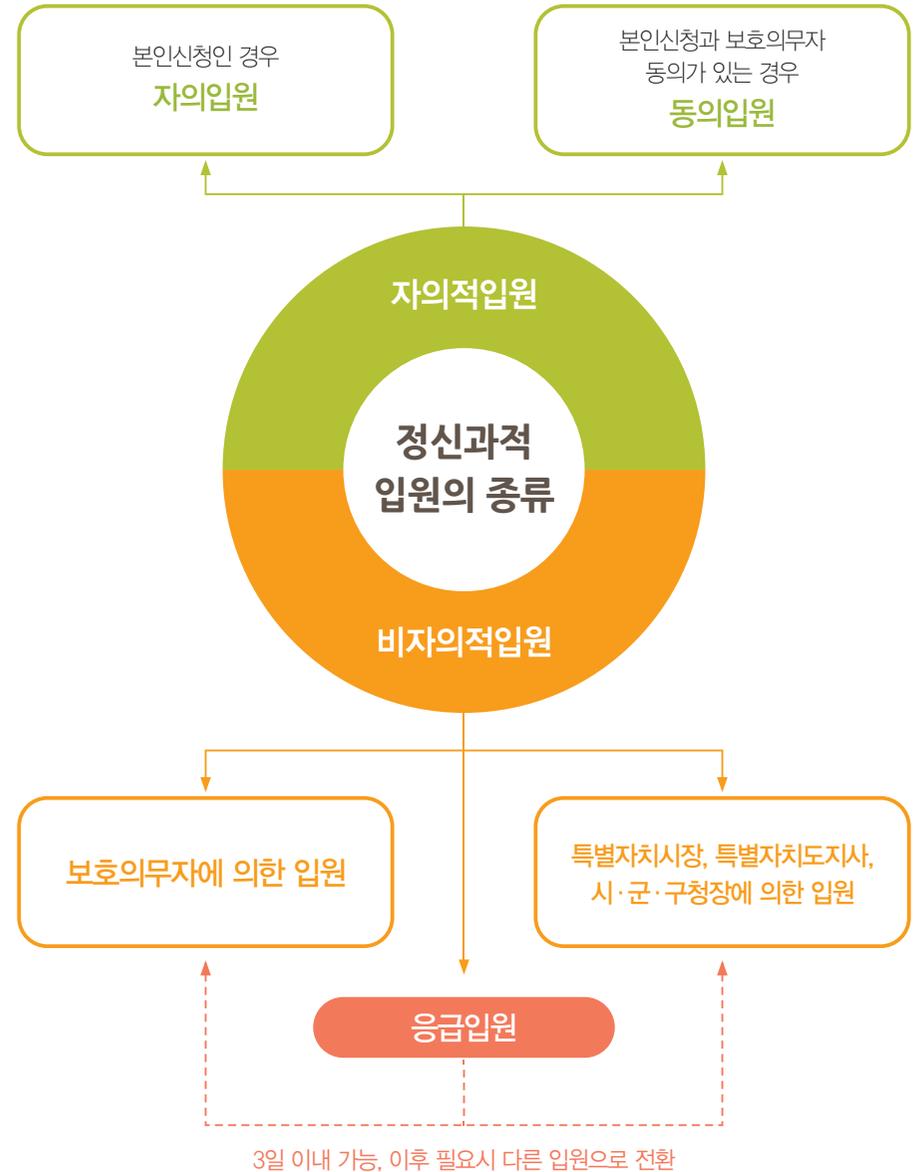
비자의적 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방법

-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“퇴원등 처우개선 심사”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 신청을 위해 진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법원에 퇴원을 위한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비자의적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필요성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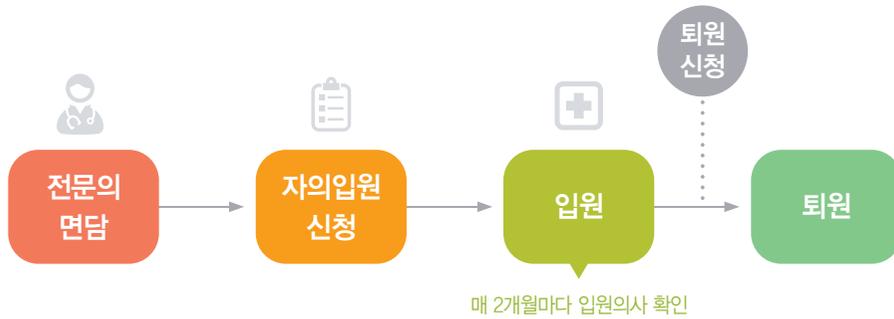
- 2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방문하여 입원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.
-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원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 (단,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는 '18. 5. 30. 이후 도입됩니다)

※ 위 각 신청 및 청구 서류는 정신의료기관 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Part. 02 자의입원

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.

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
전문과의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- ※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(전자문서 포함)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퇴원신청

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이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.

- ※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외사를 확인합니다.

Part. 03 동의입원

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,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.

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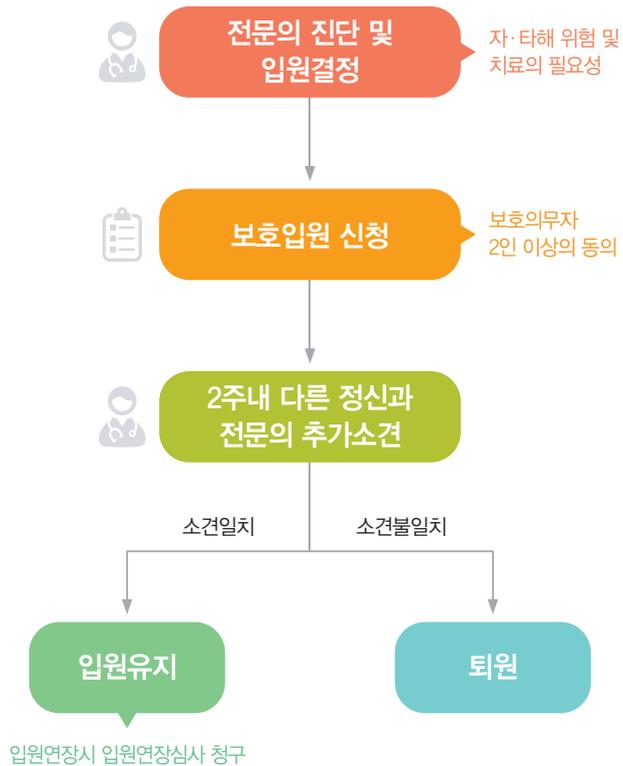
- 전문과의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.
-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,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.

퇴원신청

-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.
- 환자 본인은 퇴원을 원하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.

Part. 0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

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,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.

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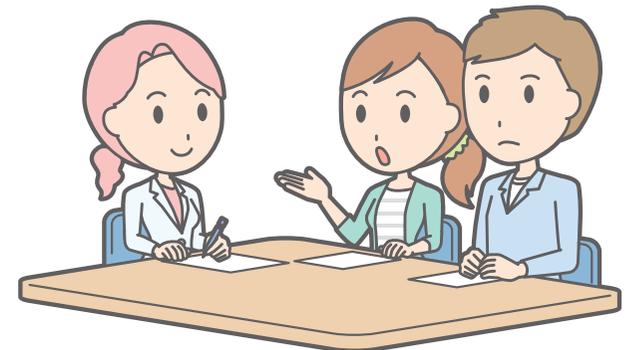
-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.
-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'보호입원등 신청서'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-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.
- ※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,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.

입원유지 및 입원연장

-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,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
퇴원신청

- 입원기간 중 언제든지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Part. 04 입원 퇴원 보호입원 시 증빙서류

정신질환자의 서류

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

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

보호의무자의 서류

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

주민등록표등본 1부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

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/ 기본증명서 / 혼인관계증명서
입양관계증명서 /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

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/ 후견심판서 등

보호입원 신청서 1부

Part. 04 입원 퇴원 보호의무자 자격 및 결격사유

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.

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보호의무자 결격사유

- 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-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③ 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
- ④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
- ⑤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

-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
- 고령·질병·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
→ 해당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
-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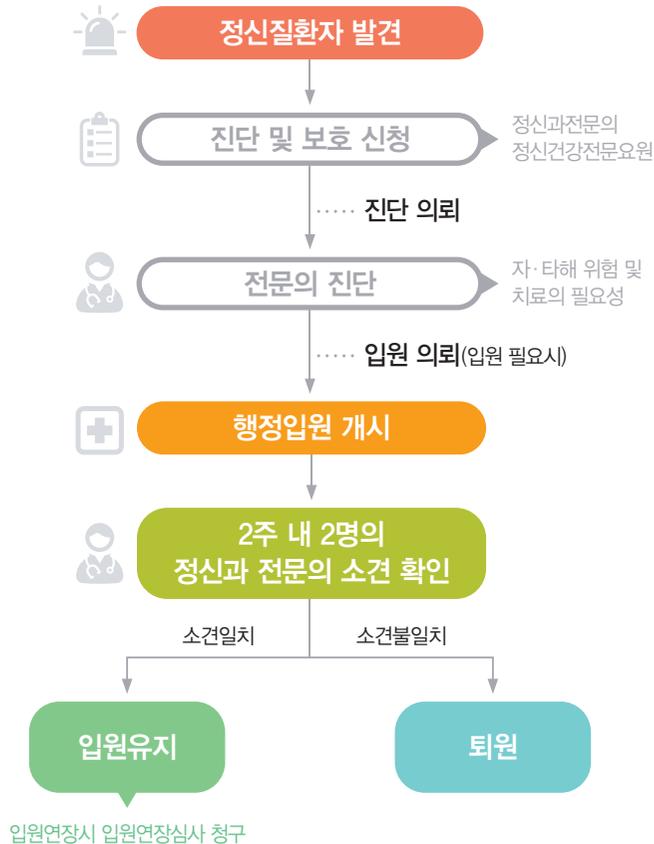
※ 해당 결격사유문제가 해결되었을 시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회복됩니다.



Part. 05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

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.



진단 및 보호 신청

-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,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※ 경찰관은 '진단과 보호 신청'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
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'지정정신의료기관'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.
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2주 내 전문의 2명의 소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, 해당 환자의 행정입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
행정입원 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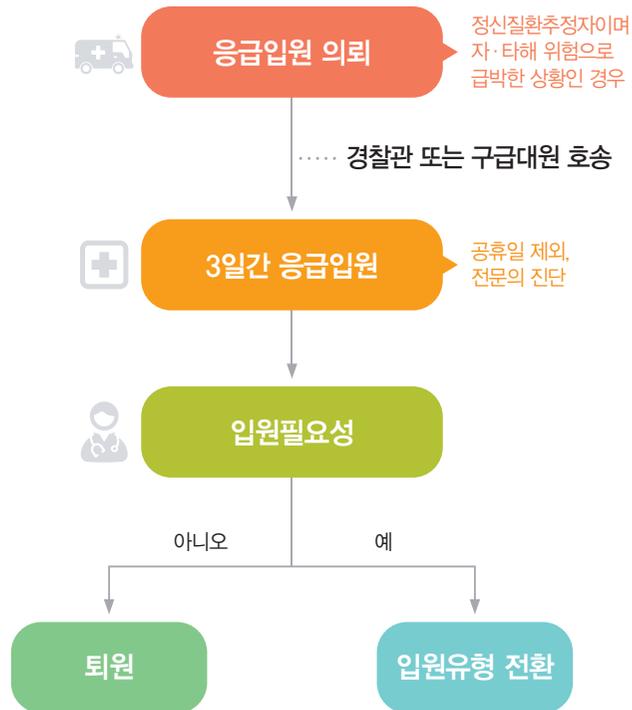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. 다만,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-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

Part. 06 응급입원

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·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·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.



입원의뢰

-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할 수 있습니다.
- ※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.

전문의 진단 및 입원

-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,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

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환
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.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·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.





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비매품/ 무료



9 791186 322413

ISBN 979-11-86322-41-3